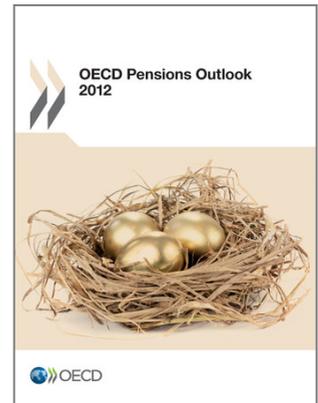


OECD *Multilingual Summaries*  
**OECD Pensions Outlook 2012**  
*Summary in Korean*



Read the full book on:  
10.1787/9789264169401-en

---

## 2012 년 OECD 연금 전망

### 국어 개요

- 금번 OECD 연금전망 보고서에서는 변하는 연금의 현황을 살핀다.
- 본고에서는 경제위기 이후 연금개혁, 자동조정기능 설계, 중앙유럽과 동유럽의 연금체계 개혁의 반전, 사적연금제도 적용범위, 확정기여형 연금제도의 보장 등을 살펴본다.
- 확정기여형 연금정책 로드맵과 부속 통계자료로 끝을 맺는다.

## 연금: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그렇게 보이지 않을 수 있겠지만 오늘날의 은퇴자들은 연금과 연금 생활자의 황금기였다고 나타날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다. 가난한 생활을 하는 노년층은 과거에 비해 훨씬 적고 1980년대 중반에 비하면 1/4 정도 적다. 이들은 더 오래 살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는데 현재 65세 이상의 노년층은 그들의 부모 세대보다 3.5년 더 오래 살 것으로 예측한다.

이에 반해 현재와 미래의 근로자들은 은퇴 전까지 더 오래 일해야 하면서 받게 되는 공적 연금은 더 적을 것이다. 이들의 사적 연금이 확정기여형일 가능성이 훨씬 큰 편인데 이는 각 개인이 투자 위험에 보다 직접적으로 노출되고 스스로 길어진 노후의 연금 비용을 부담하게 됨을 의미한다.

2007~08년의 금융 쇼크는 이후 몇 년간 대부분의 OECD 국가의 경제와 공공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면서 파문을 일으켰다. 지난 십년간 이미 변화의 물결을 타고 변형되었던 연금 제도는 대개 재정건전화와 국제금융시장 압박에 밀려 또 다시 개혁 대상이 되었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OECD 국가의 절반 이상이 채택한 연금수급 연령의 연장이었다. 장기적으로 13개 국가에서 연금연령이 67세 또는 그 이상일 것이며 1개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서 남녀의 연금 연령은 같을 것이다. 근로기간 연장을 장려키 위한 정책 가운데 조기은퇴 조건 강화, 정년 이후 근로활동 지속에 대한 보상 등과 같이 눈에 덜 띄는 정책들이 14개 국가에서 실시되었다.

이러한 발전 방향은 4가지 이유로 반가운 일이다. 첫째, 수명 연장과 함께 더 오래 일하는 것이 세금 인상에 비해 고통이 덜하면서 연금제도의 재정 지속성을 개선해준다. 둘째, 세대 간의 고령화 비용 부담을 보다 공평하게 만든다. 연금 기여 기간을 늘리면 연금혜택의 계획된 감소가 퇴직 소득에 미칠 영향을 상쇄할 수 있다. 셋째, 장년층 근로자를 노동시장에서 퇴출하여 조기노령연금은 물론 장기 병가나 장애를 통해 조기퇴직에 이르게 했던 과거 실패한 정책과의 확실한 단절을 보여준다. 실패한 정책에 대한 표면상의 이유는 청년층의 일자리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점이었다. 그렇지만 이는 노동총량오류의 또 다른 예에 불과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있다. 실로 장년층 노동력 유지가 청년 일자리 기회를 줄이지는 않는다. 넷째, 노동력이 소폭 늘거나 줄어드는 여건에서 근로 기간의 연장은 고령화가 진행된 국가의 경제성장에 중요한 촉진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뚜렷이 보게 될 이점을 감안하면 정년을 67세 이상까지 연장하는 추세는 장려돼야 한다. 이를 이루기 위한 효과적이고 투명한 방법의 하나가 덴마크나 이탈리아 같이 정년과 평균수명을 제도적으로 연결시키는 것이다.

지난 10년간 추진된 연금 개혁으로 인해 많은 국가에서 약속한 공적 연금이 보통 1/5에서 1/4 사이로 줄게 되었다. 이러한 감축은 현재와 미래의 은퇴자를 위한 연금제도의 재정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 2007년 이후 OECD 국가의 절반이 공적연금제도의 재정 지속성을 개선하기 위해 연금혜택 산정 방식과 물가연동조건의 변화와 같은 추가적 조치를 취했다.

오늘 OECD 국가에서 일을 시작한 근로자가 공식적인 정년 연령에 일을 그만두게 되면 실제 수령할 공적 연금이 보통 본인 순소득의 절반 정도가 된다고 기대할 수 있다. OECD 국가 가운데 소위 연금의 “순소득대체율”이 50% 미만인 경우가 절반이다. 이 중 13개국에서 사적 연금은 의무 사항이다. 법규나 사회계약은 모든 근로자들이 이러한 연금제도에 가입할 것을 요구한다. 그 결과, 사적 연금을 포함한 의무가입 연금을 합산하면 OECD 국가의 평균 순소득대체율은 69%에 이른다.

그렇지만 커다란 “연금 격차”가 드러나는 12개 OECD 국가에서는 의무적인 연금제도의 순소득대체율이 60%에 못 미친다. 이들 국가는 대부분이 사적 연금 가입이 자발적이며 그 가입률이 노동인구의 절반을 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이들 국가에서는 연금 격차를 좁히기 위해 사적 연금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다. 정년 연령의 연장이 추가 시행되는 경우에도 근로자들이 노후에 저축에 의지할 수 있도록 근로 소득과 공적 연금을 보완하는 사적 연금 준비를 장려해야 된다. 이는 특히 특정 연령이나 단계적 퇴직 이후에 유연한 근로 조건을 찾는 이들의 관심을 끌 수 있다.

사적 연금을 의무화하는 것이 연금 격차를 제거하고 연금 혜택의 적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이상적인 해법일 것이다. 그렇지만 이 부담액이 또 다른 세금으로 보여질 것을 우려한 몇몇 국가들은 이러한 정책을 멀리했다. 이와 유사한 결과에 이르기 위한 다른 방법인 소위 “자동가입제도”는 이러한 제도에 개인을 자동으로 가입해 놓고 일정 시간 내 중단할 가능성을 허용하는 것이다. 개인이 연금 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탈퇴하도록 함으로써 관성의 성질을 이용하여 연금 적용범위를 확장하는 것이 목표이다. OECD에서 최초 전국적으로 실시된 자동가입 연금제도는 2007년 뉴질랜드에 도입된 KiwiSaver 제도인데 신규 취업자 사이에 높은 가입률을 확보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었으며 탈퇴율이 20%에 그쳤다. 2012-17년, 영국에 이러한 제도가 실시될 것이며 다른 국가들도 그대로 따라할 것으로 보인다.

사적 연금의 역할을 확장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또 다른 주요 정책은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다. 각자의 노후를 위한 저축을 장려하는 전통적인 방법은 세제 혜택이었다. 최근 세제혜택을 확대한 국가들이 몇몇 있었던 반면 호주, 아일랜드, 뉴질랜드, 영국은 포기한 세수입 형태의 재정 비용을 줄이기 위해 세제 혜택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움직였다. 독일 등 다른 곳에서는 비용이 문제가 되었다

기존 방식으로 설계된 세제 혜택의 문제는 가장 높은 한계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자들에게 그 이익이 돌아간다는 것이다. 실제로 자발적인 연금제도를 갖춘 대부분의 국가에서 연금제도에 가입할 가능성은 저소득 근로자 사이에 가장 낮다. 저소득층 인구를 확보하는 보다 효과적인 방법은 저축자에게 일정액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누진성을 높이도록 일정 수준에 한정시킨 연금의 일정부분을 기여하는 것이다. 이러한 재정 인센티브는 소득세를 안 내거나 소액을 내는 저소득 근로자에게 더 큰 이익이 될 수 있다. 일부 연금저축상품에 이러한 인센티브를 제공했던 독일, 뉴질랜드, 2 개 국가에서는 상이한 소득계층 간에 거의 유사한 가입 비율이 나타나고 있다.

정책입안자들은 사적연금의 적용대상을 확장하는 것 외에도 연금혜택의 적정성을 높이기 위해 3 가지 측면에서 행동을 취할 필요가 있다. 첫째, 이러한 연금에 기여하는 분담금이 연금소득 목표를 충족하기에 충분하지 확인해야 된다. 이는 의무적인 연금 제도 경우에 간단한 사항인데 예를 들어 호주는 최근 최저 기여율을 급여의 9%에서 12%로 증대한다고 발표했다. 둘째, 연금의 조기 인출과 일시불 지급을 제한하여 연금 제도에서의 누출을 제한해야 된다. 셋째, 비용이 적게 드는 상품과 투자전략을 홍보하고 자산 축적 기간이나 연금이 지급되는 퇴직 기간 동안의 위험을 완화시켜야 된다. 이러한 과제를 떠안는 정책입안자들은 투자와 연금 옵션에 주의를 기울이고 복잡한 재정 의사결정을 단순화 및 활성화 해야 된다. 또한 개인의 요구와 기대에 더 부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선택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디폴트옵션 구상을 개선해야 된다.

“어느 나라의 연금제도가 제일 좋은가?”는 OECD 에 자주 하는 질문이다. 그렇지만 순위 배열과 순위표 작성에 대한 욕심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답하기 아주 어려운 질문의 하나이다. 올바른 답은 모든 국가에서 퇴직소득 준비는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모든 국가들이 연금제도 적용 범위, 연금의 적정성, 재정 지속성 또는 개인이 떠안는 위험과 불확실 등과 같은 문제들을 적어도 몇몇은 안고 있다. 따라서 OECD 국가 연금에 대한 전망은 필요하면서 지속되는 변화의 전망이다.

© OECD

**본 개요는 OECD 공식 번역이 아닙니다.**

본 개요의 복제는 경제개발협력기구의 저작권 및 해당 출판물의 제목이 명시될 때에만 허가됩니다.

본 개요는 다음과 같은 영어 불어 제목으로 출판된 경제협력개발기구 출판물 중에서 발췌한 내용을 번역한 것입니다.

본 개요는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온라인 서점에서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www.oecd.org/bookshop](http://www.oecd.org/bookshop)

자세한 정보는 OECD Rights and Translation unit, Public Affairs and Communications Directorate 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rights@oecd.org](mailto:rights@oecd.org) 팩스:+33 (0)1 45 24 99 30.

OECD Rights and Translation unit (PAC)

2 rue André-Pascal, 75116

Paris, France

본 기구 웹사이트 [www.oecd.org/rights](http://www.oecd.org/rights) 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Read the complete English version on OECD iLibrary !**

OECD (2012), *OECD Pensions Outlook 2012*, OECD Publishing.

doi: 10.1787/9789264169401-en